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서류 제출 안내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자자격확인)에 따라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유의사항

- 모든 제출서류는 **입주자모집공고일(2023.11.03.)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**
-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 등 모든 항목이 표기 되도록 "전체포함" 또는 "상세"로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공급자격 적격 여부 확인 중 아래 서류 외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주택공급에관한규칙」 제24조제1항 및 제52조제4항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 확인 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 서류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·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인감증명서(본인발급용) ※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· 세대구성원 확인 / 세대주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· 본인의 세대구성원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상 입증할 수 없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및 자녀 확인 불가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·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(생년월일~입주자 모집공고일)
	○	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(단신부임)	본인	·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 청약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증명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(단신부임)	세대원	· 청약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체류를 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·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	○		복합확인서	본인	· 10년(또는 25년)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군 복무기간 명시)
노부모 부양	○		노부모부양 배점기준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·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· 직계존속이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생년월일~입주자 모집공고일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·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확인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부양확인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·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생년월일~입주자 모집공고일)
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· 만 18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	
대리인 추가 서류	○		위임장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)
	○	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대리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· 신청자 위임 확인(용도 : 아파트 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	○	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· 대리인 본인 확인
	○		대리인 도장	대리인	· 서명 가능
주택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		해당자	·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	
			해당자	·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	
			해당자	·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	